

건설분야의 전자문서 유통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성진*, 김남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연구실
e-mail:{sjkim72, ngkim}@kict.re.kr

A Study on Improvement of Official Document Exchanging System in construction field

Seong-Jin Kim*, Nam-Gon Kim*

*Construction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요 약

건설현장이 공사비 대금지급, 공사비 변경요청, 실정보고 등과 같은 중요한 공문일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공문초안을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검토를 받은 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문으로 발송한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과 건설현장간에 온라인으로 공문을 사전검토 및 승인·반려할 수 있도록 공문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1. 서론

과거 건설현장은 발주청과의 협의, 사업관련 문서 제출 등의 업무를 위해 발주청에 빈번히 방문함으로써 업무의 적인 시간·비용이 낭비되었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투명한 건설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발주청 보고자료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요구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건설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건설사업정보화(건설CALS)를 추진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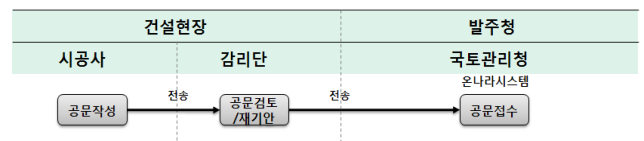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은 도로·하천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감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도면 등 각종 정보를 발주청과 건설현장(설계사·시공사·감리단)간에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환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국토해양부 본부 업무담당자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현장지원업무수행자가 사용하는 발주기관용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하천건설현장의 업무담당자가 사용하는 건설사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 용역·공사를 담당하는 건설현장이 발주청으로 공문을 발송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시스템(건설사용)을 이용하여 공문 초안을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거친 후 발주청으로 발송한다. 그러나, 발주청으로 보내는 공문 중 10% 정도는 공사비 대금지급, 공사비 변경, 현장 실정보고 등으로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공문초안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내부결재를 통해 공문으로 발송한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과 건설현장간에 온라인으로 공문을 사전검토 및 승인·반려할 수 있도록 공문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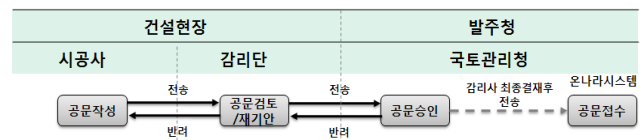
2. 공문 유통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토해양부는 도로·하천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해 2003년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현장간에 유통되는 모든 공문을 온라인으로 수·발신하고 있다.



<그림 1> 발주청과 건설현장간 기존 공문유통 방식

위의 그림과 같이, 기존 공문유통방식은 시공사가 감리단에 공문을 발송하면, 감리단은 공문을 접수한 후 제기안을 통해 발주청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발주청은 건설현장으로 부터 수신된 공문을 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서 접수한다. 그러나, 발주청은 건설현장으로 부터 수신된 일상적인 공문 이외에 상호협약이 필요한 공문이나 내용이 잘못된 공문이라도 접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문 결재 단계에서 사전검토기능을 도입하여 기존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의 공문 유통 기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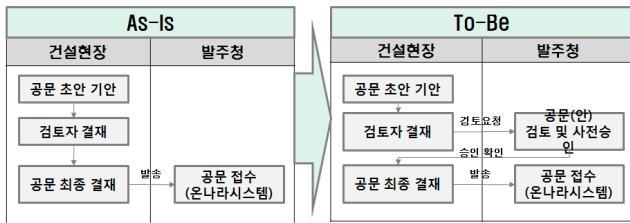


<그림 2> 발주청과 건설현장간 개선된 공문유통 방식

발주청과 건설현장간 공문 유통 개선 방안으로서, 건설현장은 공문을 기안하고 결재단계에서 발주청에게 사전

검토를 거친 이후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업무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러나, 발주청이 건설현장으로부터 수신된 모든 공문을 사전검토 이후에 접수처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검토가 필요한 공문을 건설현장 담당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며, 공문이 아닌 공문(안)에 대한 사전검토 함으로서 건설현장과 발주청간의 공문 접수와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공문 유통개선에 따라 업무프로세스 변경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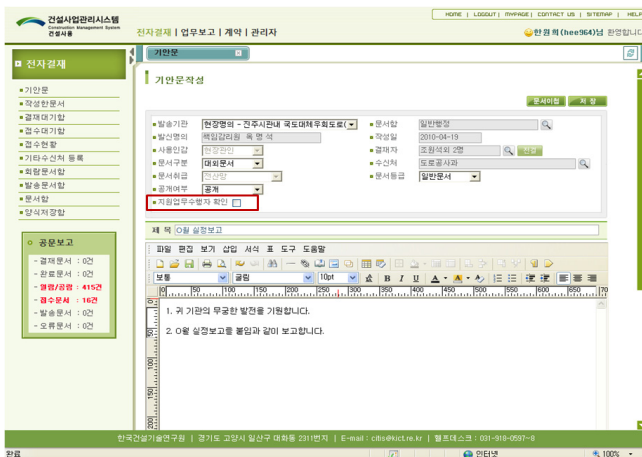


<그림 3> 공문 결재·발송 업무프로세스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는 공문서라 칭하며,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시점부터 문서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공문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문서 성립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기 이전에 발주청과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서결재과정인 기안자-검토자-결재자 순으로 되어 있는 결재경로를 기안자-검토자 이후 발주청에 검토를 받은 후 결재자순으로 변경처리 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는, 건설현장의 최종결재권자가 공문을 결재한 이후 발주청이 반려처리하게 되면, 문서는 성립된 상태에서 수신처인 발주청이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문 사전 승인 방식은 건설현장에서 기안자가 문서를 기안하여 최종결재자가 결재하기 직전에 협조자 형식으로 결재처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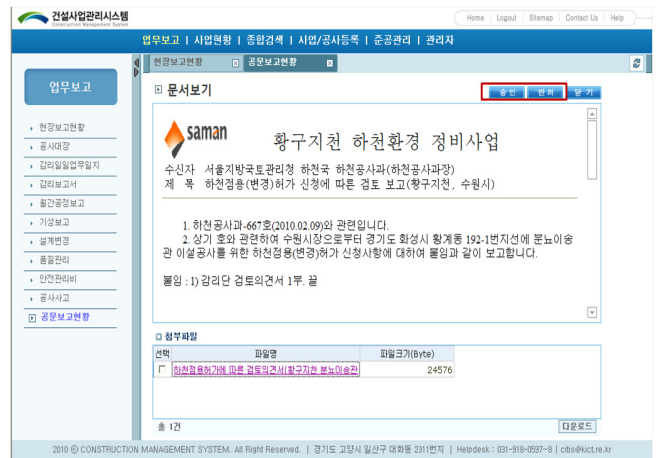
다음은 공문 결재과정에서의 사전 승인 처리에 대한 화면이다.



<그림 4> 건설현장의 공문 사전 검토 요청

위의 화면에서 기안문 작성시 '지원업무수행자 확인'을 선택할 경우 해당 공문 결재 과정에서 발주청에 사전 검토를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건설현장에서 사전검토를 요청한 공문에 대해 발주청이 승인 또는 반려처리하는 화면이다.



<그림 5> 발주청의 공문 사전 검토 처리

위의 화면에서 발주청은 건설현장으로부터 검토요청된 공문(안)의 내용과 붙임문서를 확인하고 '승인' 또는 '반려'를 선택할 수 있다.

3. 결론

2009년도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현장간에 유통되는 공문은 26만건에 달하며, 이 중에서 본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정보고 등 중요 공문은 대략 26,000건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발주청과 건설현장간 공문 유통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발주청과 건설현장간에 공문 발송전 온라인 사전협의 및 검토가 가능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업무처리시간이 10% 절감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 담당 건설현장은 발주청과의 공문 유통시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전자결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청으로 공문 발송시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본사로 공문 발송시 내부결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향후, 민간에서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과 건설사업관리시스템간의 공문 데이터 연계를 통해 발주청과 본사간, 본사와 건설현장간에 원활한 공문 유통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사무관리실무편람, 행정안전부, 2008
-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9 건설CALS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국토해양부, 2010. 5.